

1. 개정이유

「행정규제기본법」에서 기존 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 등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정을 재검토하고 「어촌·어항법 시행령」 등 5개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「어촌·어항법 시행령」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어촌종합개발시설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코자할 때, 공용·공공용이 아닌 목적 외 사용승인 기간을 토지는 3년에서 5년, 시설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추진하는 등 5개 시행령에서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국무조정실의 일몰 규제심사를 마침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3) 규제 신설 등 없음

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어촌·어항법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

제1조(「어촌·어항법 시행령」의 개정) 어촌·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2항제1호나목 중 “3년”을 “5년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“1년”을 “3년”으로 한다.

제2조(「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의 개정)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「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자로서 최근 3년 간 「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 및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

제3조(「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의 개정)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6조의2를 삭제한다.

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승인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개발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	법 제17조제1항제3호	경고	승인 취소
---	--------------	----	-------

제4조(「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」의 개정)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제2항제1호 중 “3회”를 “5회”로 한다.

제5조(「항만법 시행령」의 개정)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4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「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자로서 최근 3년간 「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 및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어촌·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6조(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승인) ① (생략)	제16조(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승인) ① (현행과 같음)
②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.	②----- ----- ----- ----- --.
1.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가. (생략) 나. 그 밖의 경우 : <u>3년</u>	1. -----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----- <u>5년</u>
2.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가. (생략) 나. 그 밖의 경우 : <u>1년</u>	2. -----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----- <u>3년</u>

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령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사업시행자의 지정 등) ① (생략)	제10조(사업시행자의 지정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“자 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 자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9. (생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<u>10. 「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자로서 최근 3년 간 「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 및 같은 법 제2 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</u>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
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제26조의2(규제의 재검토)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 및 별표 1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</u>	<u><삭 제></u>

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8조의2(주식의 추가발행) ① (생략)	제8조의2(주식의 추가발행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“주식의 추가발행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”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주식의 추가발행 횟수는 <u>3회</u> 이내일 것	1. ----- <u>5회</u> -----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
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4조(사업시행자의 지정 등) ① (생략)	제54조(사업시행자의 지정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법 제50조제1항제5호에서 “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 자자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6. (생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7. 「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자로서 최근 3년 간 「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 및 같은 법 제2 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
③ ~ ⑤ (생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	
연 락 처	(051) 773 - 5166